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5]

2023년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세율	
호	소호	품 명	규격 등	(%)	한계수량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 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2	10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탈지분유	0	
0402	2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5,000톤
0402	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전지분유	0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 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405	10	버터		0	
0405	90	기타		0	2,000톤
0406		치즈와 커드(curd)			
0406	10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 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0	
0406	2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0	40,000톤
0406	3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0	
0406	4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 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 한 그 밖의 치즈		0	
0406	90	그 밖의 치즈		0	
0703		양파·샬롯(shallot)·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	90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대파	0	2,000톤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으로 한정한다]			
0803	90	기타		0	30,000톤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4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 포멜로(pomelo)		0	2,000톤
1801	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 로 한정한다)			
		1. 볶지 않은 것		0	수입전량
2009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9	2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주스, 포멜로(pomelo) 주스		
2009	21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0	1.000
2009	29	기타	0	1,000톤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10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붙임2] (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Contact



소윤혜 관세사 T 02-6011-3012 E yhso@esein.co.kr



전혜리 관세사T 02-6011-3101
E syjeon1@esein.co.kr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